경운대학교 융합전공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 및 연계·융합전공교육위원회규정에 의한 융합전공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 편입학자는 1학기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5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신청시기) 신입학자는 2학기부터, 편입학자는 편입당해 학기, 매 학기말에 신청한다.

제4조(신청방법) ① 융합전공의 신청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며 매 학기 말에 신청한다.

②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신청자를 일괄 심사한 후 허가자 명단을 교학처에 통보한다. <개정 2021.10.01., 2022.12.01.>

③ 교학처에서는 융합전공 이수 허가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게시 및 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21.10.01.>

④ 융합전공 이수는 허가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제5조(대상과목) ① 융합전공 운영 시 기존의 개설과목을 활용하도록 하며, 신설과목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목명과 교과목 개요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② 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만으로 교과과정의 편성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이수) ① 전공이수학점은 융합전공과목 36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융합전공별운영위원회에서 해당전공에 대한 최소전공이수학점을 결정한다. <개정 2020.03.01.>

② <삭제>

③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인정 범위는 최소전공 이수학점의 1/2이내로 한다.

④ 융합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융합전공의 과목도 융합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상의 편성 학점 수는 융합전공 이수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이수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융합전공 교과과정 편성은 각 분야별 교과목을 골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⑤ 영역별 교과목 구성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서 선수과목을 지정 편성할 수 있으며, 전공필수과목 편성을 각 융합전공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수로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이수기간) 주전공학부(과)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융합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

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융합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부(과)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제9조(이수제한)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

제10조(이수포기) ①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말까지 “융합전공 취소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1.10.01.>

② 융합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 동안 이수한 융합전공과목 학점은 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학점 또는 본인의 희망할 경우 부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12.01.>

제11조(주임교수)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융합전공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10.01.>

제12조(개설심의) ① 계열, 학부에서 제안한 융합전공의 타당성은 “연계·융합전공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연계·융합전공교육위원회“는 매년 1회 제안된 융합전공 신설 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며, 기존의 융합전공의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전공폐지를 심의한다.

1. 전공신청인원 3개학기 연속 10명 미만
2. 전공이수인원 3개연도 연속 5명 미만
3. 전공 운영방침에 따른 예외 가능

제13조(학위수여) ① 융합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학부(과)의 학위명과 융합전공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융합전공에 따른 학위명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09.01.. 2022.00.00.>

융합전공명	수여학위명	비고
항공정비 융합전공	공학사	
영상촬영드론응용 융합전공	공학사	
보안재난관리드론응용 융합전공	공학사	
항공시뮬레이터제작 융합전공	공학사	
항공융합보안 융합전공	항공보안학사	
항공보건과학 융합전공	보건학사	
전자정보 융합전공	공학사	대구경북혁신대학 공동교육과정
미래차 융합전공	공학사	

제14조(증명발급) 재학 중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주전공학부(과)와 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15조(학칙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